진로지도교수제운영규정 5-1-66

규정번호	5-1-66
제정일자	2022.2.21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5차 개정
관리부서	AI융합진로지원센터

[규정명칭 변경 2025.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생들의 진로 전반에 대한 지도를 전담하는 진로지도교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1.24., 2025.1.23., 2026.02.06.)

제2조(정의) “진로 지도교수”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지도를 할 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24.01.24.,2025.1.23., 2026.02.06.)

제3조(주관부서) 진로지도교수제는 학생지원처 AI융합진로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학생지원처장은 그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2.6.8.,2024.7.24.,2025.1.23., 2026.02.06.)

제4조(위촉) ① 진로지도교수는 각 학과에서 추천하고 학생지원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6.8.,2024.7.24.,2025.1.23., 2026.02.06.)

② 진로지도교수제는 진로지도 경험과 대내외적 교섭력 및 진로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으로 하여 각 학과에서 1명을 지정한다.(개정 2025.1.23., 2026.02.06.)

③ 진로지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5.1.23., 2026.02.06.)

제5조(역할 및 의무) 진로지도교수는 학과 학생들의 진로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지도에 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01.24.,2025.1.23)

1. 진로 상담 (개정 2024.01.24., 2026.02.06.)
2. 학과별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개정 2024.01.24., 2026.02.06.)
3.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지원(개정 2024.01.24., 2026.02.06.)
4. <삭제(2024.01.24.)>
5. <삭제(2024.01.24.)>
6. 교원의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 및 취·창업 양성과정 및 기타 연수 참여(개정 2024.01.24., 2026.02.06.)

제6조(전문상담) ① 추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련부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사제도(전공과정 이수, 수강신청, 휴·복학, 자퇴 등)에 관한 상담 - 학사지원팀
2. 전입생(편입생, 복학생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학사지원팀
3. 학업부진(성적경고)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학사지원팀, 상담지원팀, 교수학습팀(개정 2022.06.08.)
4. 정서, 대인관계,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한 상담 - 상담지원팀

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및 향상을 위한 상담 - 교수학습팀(개정 2022.06.08.)
6. 진로탐색, 진로적성, 자기계발, 실전취업 등에 대한 상담 - AI융합진로지원센터(잡카페)(개정 2022.06.08., 2026.02.06.)
7. 그 밖의 대학생활 상담 - 관련부서

② 각 행정부서는 진로 지도교수가 추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처우 및 인센티브) 진로지도교수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우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1.23., 2026.02.06.)

1. 진로지도교수 임기 중 월별 활동보고서 6회 이상 제출 시,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01.24.,2025.1.23., 2026.02.06.)
2. 교내·외 진로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개정 2024.01.24., 2026.02.06.)
3. 학기 중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진로지도교수 및 관련 부서 직원은 학생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로지도교수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외에는 학생 신상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개정 2025.1.23., 2026.02.06.)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9> (생략)

<20> 진로지도교수제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창업센터"로, 제6조제6호의 "진로취업지원팀"을 "진로취·창업팀"으로,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을 "진로취·창업센터장"으로 변경한다.

제6조제3호 및 제6조제5호의 "교육혁신지원팀"을 "교수학습팀"으로 변경한다.

<21> - <25>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5조, 제5조제1호~제6호, 제7조제1호제2호)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적용하되,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제7조, 제7조제1호, 제8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6호, 제6조·제6호, 제7조·제1호·제2호, 제8조)